

인천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나56025(본소), 2021나5603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나56025(본소), 2021나56032(반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19가단200873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김정섭

변론종결 2022. 4. 19.

판결선고 2022. 5. 24.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19가단200873(본소), 2019가단 200880(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반소청구 추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4,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추가·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2행 “2013. 10.경까지 경찰청, 2013. 11.경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였다.”를 “2013. 10. 10.경까지 경찰청, 2013. 10. 11.경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였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11행부터 16행까지를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9. 11. 20.부터 2011. 3. 19.1) 까지 16개월 동안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 대부료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 차임 상당인

5,600,000원(= 350,000원 × 16개월) 및 2011. 3. 20.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용

개시일인 2019. 10. 2.까지 102개월2) 동안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

차임 상당인 40,800,000원(= 400,000원 × 102개월)의 합계액 46,400,000원에서 원고가 5회에

걸쳐 지급한 차임 1,750,000원과 3회에 걸쳐 지급한 10,000,000원을 제한 34,050,000원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7행부터 20행까지를 “[한편 피고의 주장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납입하여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을 시기에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추가 전 반소 청구(2010. 10. 1.부터 2018. 12. 12.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예지희, 판사 김은경, 판사 권비룡

1) 피고는 2021. 6. 10.자 준비서면에 2011. 3. 18.까지라고 기재하였으나, 2011. 3. 19.의 오기로 보인다.

2) 1개월에 미치지 않는 부분은 차임 청구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3) 46,400,000원에서 11,750,000원(1,750,000원 + 10,000,000원)을 제하면 34,650,000원이나, 피고가 위 금액을 반소로 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